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4519 손해배상(지)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오수진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6. 5. 6.

판 결 선 고 2026. 5.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30.부터 2026. 3.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연구, 개발, 제조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2)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약436호로 저작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25. 5. 19. 별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벌금 4,000,000원 및 641,000원의 추징을 명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 사실서버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사건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게임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 기초한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의 내용, 피고의 서버 개설기간 및 침해의 정도, 원고가 주장하



는 추정손해액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손해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인 2024.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6. 3.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근수



법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가 저작권자로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C'의 프로그램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닌 피고인이 원하는 서버로 접속을 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설한 서버(속칭 사설 서버)인 'D'에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게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속칭 '후원금')을 얻기 위하여 위 C 게임의 클라이언트 파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해제 및 클라이언트 파일의 정보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배급·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설 서버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23. 2. 19.경 김포시 E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A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로 디스코드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한 후, 그때부터 2024. 4.경까지 위 D 서버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주식회사 A의 게임물인 위 C 게임에 우회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파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고 피고인이 변형한 상태로 위 C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접속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2023. 4. 3.경부터 2023.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 아이템을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로 합계 64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19.경부터 2024. 4.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A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온라인 게임 'C' 게임을 복제하고 임의로 변경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위 플레이어들로부터 아이템 판매 대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A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